의안번호	2209736
의 뢰 인	김주영 의원
회 답 일	2025. 5. 1.
추계번호	25F2259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– 농어업인 등 융자 관련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–

【비용추계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비용추계 결과

❑ 개정안에 따라 농어업인 융자 관련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할 경우, 등록면허세는 2026년 208억원, 2027년 208억원 등 2026년에서 2027년까지 2년간 총 416억원(연평균 208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27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6	2027	누적	연평균
농어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(안 제10조제1항)	−208	−208	−416	−208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조제1항 (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등)	○ 농어업인(영농조합법인, 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포함) 융자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−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7.12.31.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10조제1항 (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❑ 개정안이 2025년 중 통과될 것을 전제로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2026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가정

❑ 향후 농어업인 융자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액은 최근 5년간(2019~2023년)간 등록면허세의 감면실적의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연평균액(208억원)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

❑ (제도 개요) 상호금융기관의 농어업인 융자 시의 융자담보물 등기(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 포함)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

- ○ 감면액: 등록면허세의 50%
- ○ 적용기간: (현행) 2025년 12월 31일 → (개정안) 2027년 12월 31일

❑ (감면실적) 농어업인 융자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실적은 2019년 236억원, 2023년 130억원으로 5년간 총 1,041억원(연평균 208억원)으로 나타남

[표 2] 최근 5년간 농어업인 융자담보물 등록면허세 감면실적 추이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19	2020	2021	2022	2023	누적	연평균
감면실적	236	252	260	163	130	1,041	208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 , 각 년도

나. 추계방법 및 결과

❑ 농어업인 융자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에 따라 2026년 208억원, 2027년 208억원 등 2026년에서 2028년까지 총 416억원(연평균 208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○ 농어업인 융자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최근 5년(2019~2023년)간 감면실적의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연평균액(208억원)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[표 3] 향후 농어업인 융자담보물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감소액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6	2027	누적	연평균
등록면허세 감소액	208	208	416	208

Ⅳ. 부대의견

❑ 없음

Ⅴ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최천규	백경엽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천규	02-6788-4838	choi1009@assembly.go.kr